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양도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양도·양수내용	운영형태 (광역형 또는 도시형)	
	노선	
양도가격		
양도·양수의 시기		
양도·양수의 사유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공통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도 1부	수수료 없음
	양수인이 운송사업자 가 아닌 경우	법인인 경우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